

[특허침해분쟁] 특허권침해, 실용신안권 침해사안 - 2018년 선고 형사판결 사례 - 형사처
별 수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 선고 2017고단8143 판결 - 특허법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 특허침해 혐의 + 추가로 허위표시행위 - 유죄 인정 판결이유 부분

2. 허위표시행위

누구든지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
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7. 3.경까지 위와 같이 I를 생산, 판매하면서,
위 I가 특허출원 중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품의 용기에 '디자인 의장특허
출원', '등록상표 특허출원'이라고 기재하였다.

(3)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고정3335 판결 - 특허법위반, 벌금 3백만원

선고

양형의 이유

특허번호 M 'N'에 대한 특허권 전부를 침해하였다고 기소되었다가 특허청구항 제2항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소장 변경된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을 폐업하고 파산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4) 인천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8고정612 판결 - 특허법위반, 벌금 5백만원

선고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한 기간,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납품받은 어스단자 및 이를 이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수량,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의정부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8고정413 판결 - 실용신안법위반, 디자인

보호법위반, 벌금 3백만원 선고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판매한 제품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판매한 제품을 회수하고 금형을 폐기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지재권분쟁 침해대응/감정, 형사/민사소송, 손해배상, One-Stop service, A~Z 수행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